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개정 2011.09.16.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이 국내외에서 연구활동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이하 “연구년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간) ① 연구년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 그 기산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한다.

② 제3조 1항의 10년의 자격으로 6개월의 연구년을 승인 받은 연구년교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연구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자격) ① 연구년을 부여하는 자격은 우리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10년 이상 근속한(연구년 기산일 기준)교원으로 연구와 교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교원이라야 한다. 다만, 임용된 후5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학술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할 수 있는 국내외 단체로부터 해외파견 연구지원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년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년 수행 후 재 부여 자격은 전항의 기준과 같다. 다만, 연구년 종료후 3년이 경과하면 6개월의 연구년 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다.

③ 국비 파견교원과 교류교원 또는 파견근무교원(전문위원등)은 본 규정에 의한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3년이 경과하면 국비파견교원, 교류교원 또는 파견근무교원(전문위원등)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제한) ① 연구년교원의 수는 전체교원의 10분의 1이내로 하고 소속학과 교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연도 연구년교원의 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년교원의 수에는 휴직교원, 국비 파견교원, 교류교원, 파견근무교원(전문위원 등),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중인 교원 및 기타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 재단 또는 연구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출장 교원의 수를 포함한다.

③ 교무위원, 부속기관장 등의 보직교원에게는 보직 재임기간 중에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우리 대학교의 학사운영과 교내외 연구활동수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징계처분(견책이상)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3년 이내에는 연구년교원이 될 수 없다.

⑥ 연구년교원은 제7조 제5항의 결과물로서는 학술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⑦ 제7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시 까

지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하며, 연구실적물 제출시 부터 다음 연구년 신청자격 기간을 산정 한다.

⑧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전공 소속 교원은 연구년교원이 될 수 없다.(신설2011.9.16)

제5조 (신분) 연구년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6조 (처우) ① 연구년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년 기간 중 학사지도비, 급량비 및 업무 추진교통비를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의무) ① 연구년교원은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후 최소한 연구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년 중의 보수전액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의 잔여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의원면직인 경우에는 임용기간과 관계없이 전항을 적용한다.

⑤ 연구년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연구결과물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결과물은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체능계의 작품전시·발표는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3회 이상 및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물이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에게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신청) 연구년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연구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연구계획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년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은 연구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9조 (선정) ① 연구년 신청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② 총장은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대학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계획변경) 연구년과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년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년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연구년교원은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의 연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타 대학에 출강 또는 타 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없다.

제12조 (휴직등과의 관계) ① 연구년 자격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휴직기간, 징계처분 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휴직중인 교원은 제3조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우리 대학교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1년이상 4년미만인 교원에게는 이 규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6월 이내의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년 신청서

신청자	대학						학과(부)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구과제명												
임용일자	년	월	일	근무년수 (연구년 기산일 현재)			년	월				
연구년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년수행 기관(장소)					자격	교류교수, 교환교수, (기타 :)						
학과(부) 교수 동의	학과 (부)장											
<p>교원 연구년제 규정 제8조에 의거 연구년을 신청합니다.</p> <p>붙임 1. 연구계획서 1부 2. 연구실적조서 1부 3. 서약서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예술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1호의 2 서식]

연구 계획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추진일정

연구기간 : . . . ~ . . .												
연구내용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참고문헌

연구년 연구결과보고서

소 속	대학		학과(부)
직 급		성 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년 수행기관 (장소)		자격	교류교수, 교환교수, (기타 :)
게재(예정) 학술지명		게재(예정)일	19 . . .
<p>연구년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위의 연구기간중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연구결과물(추후 게재 발표 출판된 별쇄본, 발표확인물, 저서 제출)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예술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3호의 2 서식]

세 부 연 구 계 획 변 경 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연구활동(연구배경)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참고문헌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귀하